

이 보도자료는 2019. 7. 15.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222



금융위원회

보도자료

2019. 7. 15.(월)

자료문의 : 증권범죄합수단

전화: 02-3219-2302

팩스: 02-3219-2401

주책임자: 단장 박광배

제 목

자산운용사 대표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사건 수사결과

□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박광배)은 부도 및 상장폐지 임박한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등으로 2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표, 사채업자 등 관련자 14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(구속 2명)하였음

- 자산운용사 대표 등은 은행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수표로 'ㅇ'社の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고,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를 진행하였음에도, 사채업자들이 내세운 형식상 법인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 하였으며,
- 자산운용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'ㅇ'社 주식 약 856만주 가량이 사채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유통된 결과, 'ㅇ'社 주가는 폭락(주당 평균 5,000원→800원)하였고, 정상적인 M&A로 믿고 'ㅇ'社の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산운용사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이 전가되었음

□ 사채업자 COO 등은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자산운용사 대표의 도움으로 'ㅇ'社の 경영권을 양수한 후 'ㅇ'社 자금 15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, 그 결과 'ㅇ'社는 현재 거래정지 및 회생절차 중임

※ 당시 □□시의원인 FOO(현 △△구청장)은 'ㅋ'社の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동생인 사채업자의 범행을 돕기 위해 마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 진행, 보도되게 하여 주가 부양 ■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) 피고인

| 순번 | 대 상 자 | 지 위 | 비고(신병)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AOO(53세) | 'ㄹ'자산운용 PEF 대표, 'ㅅ'社 대표이사 | 구속영장 기각 |
| 2 | BOO(45세) | 'ㄹ'자산운용 PEF 상무, 'ㅅ'社 이사 | 구속영장 기각 |
| 3 | COO(48세) | 사채업자, 'ㅋ'社 회장 | 별건 수형중 |
| 4 | DOO(49세) | 'ㅇ'社 대표이사 | 구속 |
| 5 | EOO(40세) | 사채업자, 'ㅋ'社 부사장 | 구속 |
| 6 | FOO(51세) | 現 △△구청장, 前 □□시의원, 'ㅋ'社 명의상 대표 | 불구속 |
| 7 | 기 타 | 관련자 및 관련 법인 | 8명 |

※ [별첨] 전체 피고인 및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

2) 공소사실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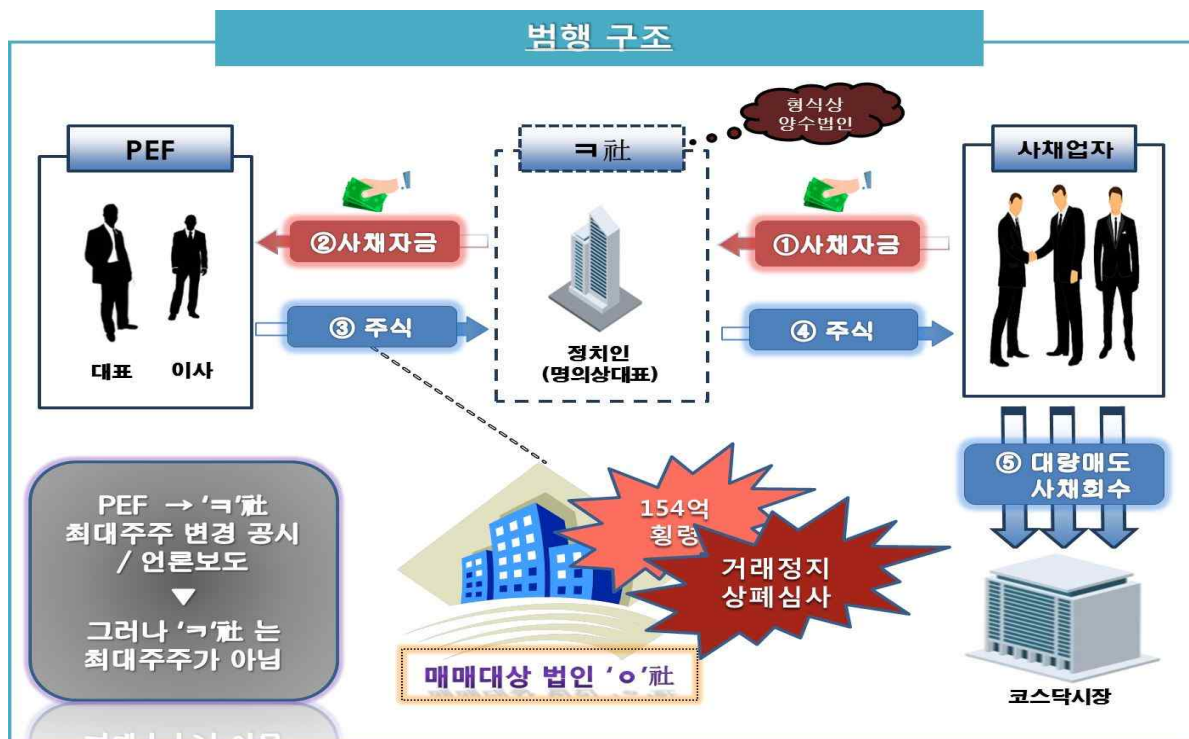
- AOO, BOO, COO, DOO, EOO 등은 공모하여, 부도·상장폐지가 임박한 'ㅇ'社¹⁾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,
 - '17. 12. 29. ~ '18. 6. 29. 'ㅅ'社²⁾ 보유 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하여 'ㅋ'社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면서, 마치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, 허위 인터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
[자본시장법위반]
- FOO은, 'ㅋ'社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에도, 위 COO 등의 범행을 돕기

1)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'02년 코스닥시장 상장
2) 'ㄹ'PEF가 'ㅇ'社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

위해, '18. 1.초경 마치 □□시의원인 피고인이 'ㄱ'社를 운영하고 있고, 'ㄱ'社가 'ㅇ'社를 자기자금으로 인수·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 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방조 [자본시장법위반방조]

- AOO, BOO은 '18. 3. 5. 최대주주가 아닌 'ㄱ'社에 'ㅇ'社 경영권을 양도하고, 'ㅇ'社의 법인통장을 넘겨주어 85억 원을 무단인출하도록 하여 배임 [특경(배임)]
- COO, EOO 등은 공모하여, '18. 3. 5. 'ㄱ'社가 'ㅇ'社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외관이 작출되자, 위 법인통장에서 유상증자금 85억 원을 임의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,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. 1.까지 회사자금 154억 원 임의 인출, 사채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 [특경(횡령)]

③ 범행개요



※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PEF는 투자목적회사('ㅅ'社)를 통해 'ㅇ'社 주식 보유

2

주요 수사 경과

- '18. 12. 10. 금융위 긴급조치(FAST TRACK) 접수
- '18. 12. 18.~19. (주)'○'社 사무실 등 16곳 압수수색
- '19. 1.~4. 이메일 압수, 계좌추적 및 관련자 조사
- '19. 4. 26. 피고인 EOO 구속 기소('19. 4. 10. 구속)
- '19. 5. 7. 피고인 DOO 구속 기소('19. 4. 22. 구속)
- '19. 7. 12. 관련자 및 관련법인 등 12명 불구속기소

※ 주범 AOO, BOO에 대하여 2회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기각

3

수사 결과

① 자산운용사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실 확인

-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기본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긴급 조치(FAST TRACK)로 이첩하고,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채 자금 및 주식의 이전 등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였음
- 자산운용사 대표는, 투자하였던 '○'社가 부도 및 상장폐지 임박하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사채업자와 공모하여, 경영권 양도를 가장하여 보유 주식을 처분, 투자금 회수하였음
- 사채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거래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면서, 은행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자금을 수표로 지급받고, 즉시 사채업자들이 조달한 금액에 맞추어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7차에 걸쳐 주식을 매도하였음

- 사채업자들이 내세운 법인인 'ㄱ'社가 'ㅇ'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,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 경영권을 양도하고, 'ㅇ'社의 최대주주가 'ㄷ'社에서 'ㄱ'社로 변경되었다는 허위의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음

※ '18. 3. 5. 경영권 양도 공시되었으나, 'ㄱ'社는 그 당시 양수 공시한 'ㅇ'社 주식 612만 주 중 123만주만 보유(123만주도 양수 직후 처분)

- 형식상 매수법인인 'ㄱ'社는 자본금 11억 원에 불과하여, 언론 등에서 인수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자, 'ㄱ'社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□□ 시의원 FOO은 자신이 운영하는 'ㄱ'社가 자금력이 풍부하여 'ㅇ'社를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하여 언론보도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


② 무자본 M&A로 인한 회사자금 대량 유출 사실 확인

-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의 경영권 및 자금관리권을 넘겨준 결과, 사채업자들은 타법인 인수가장 등으로 법인자금 154억 원을 임의인출하여 횡령하였음
- 현재 'ㅇ'社는 횡령·배임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의견거절을 받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거래정지 중으로 사채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M&A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임

③ 사모펀드의 투자손실이 소액투자자에게 전가된 결과 초래

- 'ㅇ'社의 부도 및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금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 설립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'ㅇ'社 주식 약 856만주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주식시장에 매도된 결과, 'ㅇ'社의 주가는 폭락하였음

※ '17. 12.(M&A계약 당시) 1주당 평균 5,000원이던 주가가, '18. 12.
(수사개시 당시) 평균 800원으로 1/6수준으로 폭락

- 자산운용사 및 정치인이 관여된 정상적인 M&A로 믿고 '○'社の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산운용사 설립 사모펀드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이 전가되었음 

[별첨]

피고인별 처분내용

| 순번 | 피고인 (나이) | 신분 | 범죄사실 요지(죄명) | 처분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| AOO (53세) | 'ㄹ'자산운용 PEF 부문 대표, '스'社 대표이사 | ① COO, DOO, EOO 등과 함께, 부도·상장폐지 임박한 'ㅇ'社 투자금 회수 위해, '스'社は '17. 12. 29. ~ '18. 6. 29. COO 등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 주식을 매각하는 것임에도,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 및 허위 언론보도되게 하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② '18. 3. 5.경 최대주주가 아닌 사채업자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, 'ㅇ'社의 법인통장을 넘겨주어 85억 원을 무단인출하도록 하여 배임 [특경배임] | 불구속 기소 |
| 2 | BOO (45세) | 'ㄹ'자산운용 PEF 부문 상무, '스'社 이사 | | 불구속 기소 |
| 3 | COO (48세) | 사채업자, 'ㅋ'社 회장 | ① AOO, BOO, DOO, EOO 등과 함께, 부도·상장폐지 임박한 'ㅇ'社 투자금 회수 위해, '스'社は '17. 12. 29. ~ '18. 6. 29. COO 등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 주식을 매각하는 것임에도,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 및 허위 언론보도되게 하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② EOO 등과 함께, '18. 3. 5.~'18. 8.경 M&A에 투입된 사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단인출, 타법인 가장인수 등의 방법으로 'ㅇ'社 법인자금 합계 154억 원을 횡령 [특경횡령] | 불구속 기소 ※ 별건 수형 중 |
| 4 | DOO (49세) | 'ㅇ'社 대표 | ① AOO, BOO, COO, EOO 등과 함께, 부도·상장폐지 임박한 'ㅇ'社 투자금 회수 위해, '스'社は '17. 12. 29. ~ '18. 6. 29. COO 등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 주식을 매각하는 것임에도,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 및 허위 언론보도되게 하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② 사채업자들의 사채자금 회수 및 추가하락에 따른 손해 보전을 위해, '18. 3. 5.~'18. 8.경 사채업자들이 'ㅇ'社 법인자금 154억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회수포기하고 회계 조작하여 배임 [특경배임] | 구속기소 ('19. 5. 7.) |
| 5 | EOO (40세) | 사채업자, 'ㅋ'社 부사장 | ① AOO, BOO, COO, DOO 등과 함께, 부도·상장폐지 임박한 'ㅇ'社 투자금 회수 위해, '스'社は '17. 12. 29. ~ '18. 6. 29. COO 등 사채업자들에게 'ㅇ'社 주식을 매각하는 것임에도, 'ㅋ'社가 자기자금으로 'ㅇ'社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 및 허위 언론보도되게 하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② COO 등과 함께, '18. 3. 5.~'18. 8.경 M&A에 투입된 사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단인출, 타법인 가장인수 등의 방법으로 'ㅇ'社 법인자금 합계 154억 원을 횡령 [특경횡령] | 구속기소 ('19. 4. 26.) |

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6 | FOO (51세) | 前 □□시의원, 'ㄱ'社 명의상 대표 | ① 'ㄱ'社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에도, '18. 1.초경 □□시 의원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'ㄱ'社가 자금력이 풍부하여 'ㅇ'社를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 하여 허위 언론보도되게 함으로써 사기적부정거래를 용이하게 함 [자본시장법위반방조] | 불구속 기소 |
| 7 | GOO (40세) | 'ㄱ'社 이사 | ① '17. 12. 29. ~ '18. 6. 29. COO의 지시에 따라, 'ㅅ'社로 부터 이체받은 'ㅇ'社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이체하여 주는 등 사기적부정거래 가담 [자본시장법위반] | 불구속 기소 |
| 8 | HOO (52세) | 'ㅇ'社 CFO | ① '18. 3. 5. COO 등과 공모하여, M&A에 투입된 사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85억 원을 무단인출하여 횡령 [특경횡령] | 불구속 기소 |
| 9 | IOO (43세) | 'ㅇ'社 CFO | ① COO 등과 함께, '18. 7.~'18. 8.경 M&A에 투입된 사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타법인 가장인수 등의 방법으로 'ㅇ'社 법인자금 합계 69억 원을 횡령 [특경횡령] | 불구속 기소 |
| 10 | JOO (51세) | 사채업자, 'ㅇㅁ'社 실운영자 | ① '18. 4. 18.경 'ㅇ'社가 'ㅇㅁ'社 설립자금으로 제공한 9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[특경횡령] ② COO 등과 함께, '18. 8. 1.경 M&A에 투입된 사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타법인 가장인수 등의 방법으로 'ㅇ'社 법인자금 합계 34억 원을 횡령 [특경횡령] | 불구속 기소 |
| 11 | KOO (55세) | 'ㅇㅂ'社 대표이사 | ① '18. 4. 18.경 'ㅇ'社가 'ㅇㅂ'社 설립자금으로 제공한 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[업무상횡령] | 불구속 기소 |
| 12 | LOO (50세) | 'ㄷ'社 대표이사 | ① COO 등과 함께, '18. 7. 2. M&A에 투입된 사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타법인 가장인수 등의 방법으로 'ㅇ'社 법인자금 합계 35억 원을 횡령 [특경횡령] | 불구속 기소 |
| 13 | | 'ㅅ'社 | ① AOO, BOO이 'ㅅ'社 업무에 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약 269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| 불구속 기소 |
| 14 | | 'ㄱ'社 | ① COO, EOO, GOO이 'ㄱ'社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하여 경영권 취득이라는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 | 불구속 기소 |